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민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1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민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재진,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
남창진, 박 석, 서상열,
유만희, 유정인, 이상욱,
이종환, 정준호, 최재란,
허 훈, 홍국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‘개발’과 ‘보존’의 균형으로 전환되었으며, 이에 따라 재생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및 거점시설 생활SOC 확충으로 사업 방향이 개편됨
-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,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,
-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절차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지정 및 변경 시에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심의 절차를 제공하고자 함(안 제6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8조)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도시재생위원회 구성·운영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6조(도시재생위원회 구성·운영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<u>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(도시재생위원회 구성·운영)제4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